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점검일시 : 2019.05.17 (금)

□ 점검결과

◆ 점검자 : 최영준, 박상종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유지관리 수직구 옆 개구부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난간기둥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않아 난간이 흔들리는 등 설치상태가 미비하니 난간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
 - 유출수직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은 난간기둥이 기울어져 있고,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상태가 미비하니 보완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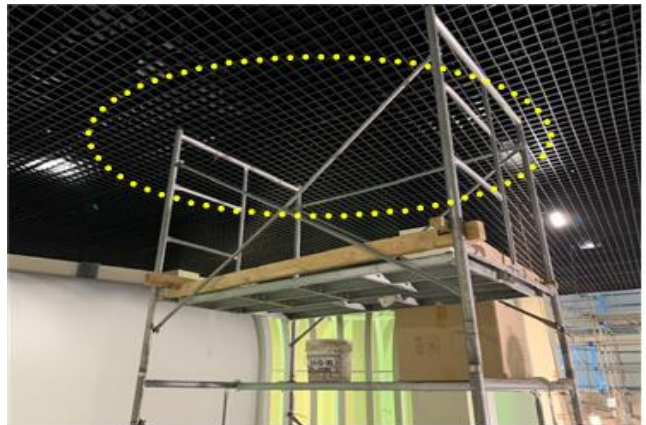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우수지 사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사면 하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배수로 하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추락방지 대책을 세워 작업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는 난간이 미설치된 부분이 있으니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난간 설치 후 작업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저지수직구 정류지 점검구 고정식 사다리에는 자재 반출작업으로 인하여 등받이용이 해체되어 있으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설치하기 바람

- 협소한 반출작업장 여건으로 인하여 자재반출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자재를 인양하고 있어 낙하물 관련 재해가 우려되니 적정 자재운반구를 사용하고 하부 작업장 낙하물 발생우려구간에는 근로자 통제를 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가설통로 안전(방재시설부)

- 환기시설 옥상층 진입구간 작업계단 높이가 높아 이동시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

- 통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근로자 이동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조치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제22조(통로의 설치)



○ 낙하·비래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남측 유수지 램프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난간은 안전방망 설치 상태가 미비하여 안전방망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가 하부로 낙하할 경우 유수지 하부 청소 및 정리 작업 근로자 안전 사고가 우려되니 안전방망 보완 및 주변 자재 정리 정돈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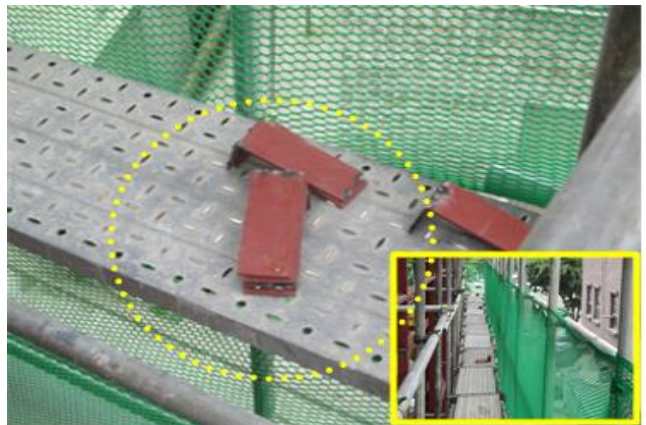
○ 낙하·비래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남측 유수지 기존 램프 철거 구간 기초 상부에 철거 부산물인 콘크리트 덩어리가 적치되어 있어 낙하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기존 램프 철거 용단작업 전 콘크리트 부산물을 제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비래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환기시설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비계에는 각종 소형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시 하부로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제거 조치하기 바람,
- 타설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모르타르는 제거하기 바람, 제거 작업 중에는 근로자 추락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제거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